

「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인재육성과장 장연규)

가. 제안이유

- 민선8기 공약사업의 교육경비 지원·자율성 확대
- 현행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목적을 확대 수정(안 제1조)
- 통학생의 정의를 중·고등학생으로 확대(안 제2조제2호)
- 지원대상을 학교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통학하는 학생으로 확대(안 제3조)
- 그 밖에 「법령입안 심사기준」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

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2항,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 개정은

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
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지원목적 및 대상 등의 조문을 확대하여 단순명료하게 정비하고,
현행 ‘고등학생’에서 ‘중학생·고등학생’으로 규정하여
관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복지의 혜택을
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”를 “교육 기회를 보장하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”를 “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중·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요비용”을 각각 “필요한 비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<u>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</u>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통학생”이란 농촌학교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<u>고등학교</u>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원신청) ①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교육 기회를 보장하기</u> 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·고등학교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원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,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② 제1항에도-----

-----.

제5조(지원방법) ① -----

----- 필요한 비용

-----.

② ----- 필요한 비용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**두고**”를 “**두고 실제**”로, “**45세**”를 “**49세**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
소프트웨어 지원사업

7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<u>45세</u> 이하인 사람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<u>두고 실제</u> - ----- <u>49세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6. (생략)

제5조(지원사업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

7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
8. (현행 제6호와 같음)